

한국응급구조학회 연구윤리 규정

* 제정: 2007. 4.

* 개정: 2009. 4.

* 개정: 2012. 6.

* 개정: 2014. 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이하 ‘학회’)의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의 학술활동을 대상으로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윤리성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 및 이중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
- ② 변조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 : 타인의 논문, 특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⑤ 중복 및 이중게재 : 같은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곳에서 발표하는 행위
- ⑥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4조 (생명윤리)

- ①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 또는 국가연구위원회의 법률을 지켜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기관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의 개방성)

-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혀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여도 배분)

-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7조 (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위원을 둔다.
- ④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 위원은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등에서 부정직 행위가 고발되고, 5년 이내의 부정행위인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10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결과 통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반론 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 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경고 처분에 따른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제명
6. 사법기관에 고발 등

②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이사회에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4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5월부터 시행한다.